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3p
2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	6p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방법	9p
4	취약계층 증빙서류	18p
5	질문과 답변	37p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1. 추진 배경 ----- 4p
- 2.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 5p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2천만⇒5천만 원) 추진

※ 2022년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 1억 (국가계약법 상시적용, 지방계약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견적서 제출

-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방지 등 건전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 확대 적용

※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확대 대상

구분	기준	변경
기업 또는 조합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 ④ 사회적협동조합 , ⑤ 자활기업 , ⑥ 마을기업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을 충족하는 기업

<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0조)」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기업(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마을기업(광역자치단체)

2.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1 1인 수의계약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2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취약계층 30% 이상 참여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기준 산정

3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제고

2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

- 1. 발급 기준 ----- 7p
- 2. 유의 사항 ----- 8p

1 발급 기준

발급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유급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발급신청(2022.10.01.)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고용보험 가입일</th> <th>고용보험 가입 일수</th> </tr> </thead> <tbody> <tr> <td>유급근로자 인정</td> <td>2022.04.05.</td> <td>180</td> </tr> <tr> <td>유급근로자 불인정</td> <td>2020.04.06.</td> <td>179</td> </tr> </tbody> </table>	구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22.04.05.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20.04.06.	179
	구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22.04.05.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20.04.06.	179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인 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가능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인증지침 준용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 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이후 '저소득자' 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2 유의 사항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검토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유효기간 : 검토(승인)결과일로부터 180일
- 제출 후 취약계층 검증과정에서 기업이 신청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의 고용비율이 상이 할 수 있음
- 신청 후 검토과정에서 취약계층 근로자가 신청시점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서류제출에 유의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자동확인 사항으로 근로자 주민번호 오기 없이 등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근로자 모두 등록(유급근로자명부와 순서 동일하게 스캔)
- 모든 첨부 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 후 등록
- 검토(승인) 결과 수신 가능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록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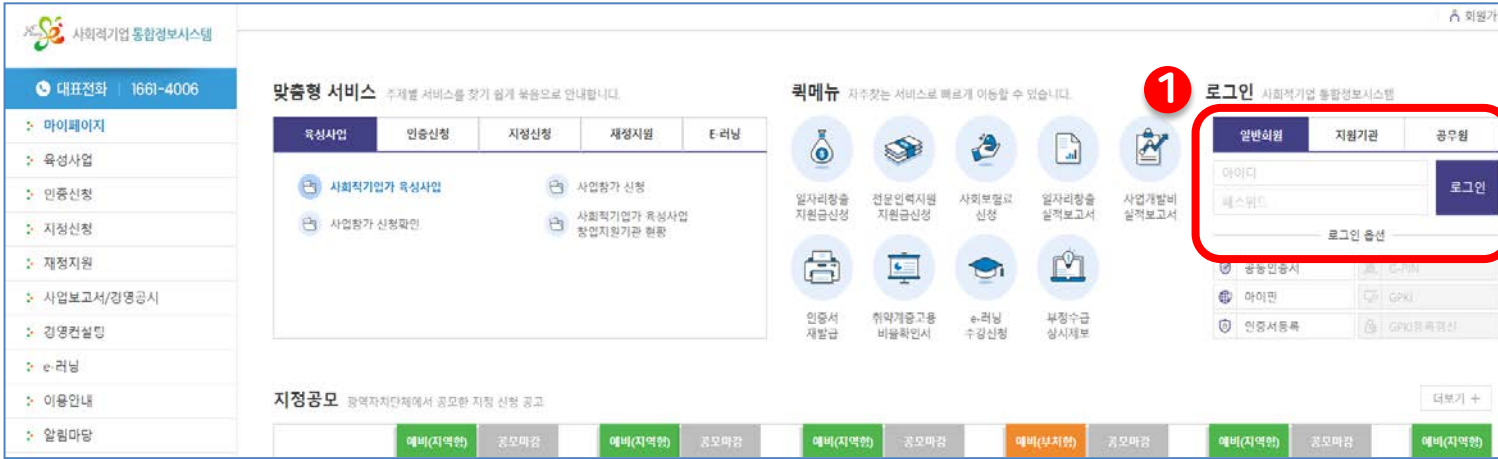
- 1. 신청 절차 ----- 10p
- 2. 신청 방법 ----- 11p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단계	수행방법	비고
발급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온라인), 유급 근로자명부(온라인)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유급근로자 전체) 	신청기업 →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로그인 → 인증신청(클릭)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클릭)	
신청서 검토 (통합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가입여부(서류 검토) 취약계층 검증(관련 증빙서류 검토)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 검토 소요기간: 15일 이내(운영일)	
신청 결과 통보 (SMS,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SMS, 이메일 결과 통보 * 미발급 사유 확인 페이지 제공 	진흥원 → 신청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발급 (통합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유효기간을 가짐 	신청기업 (통합정보시스템)

2.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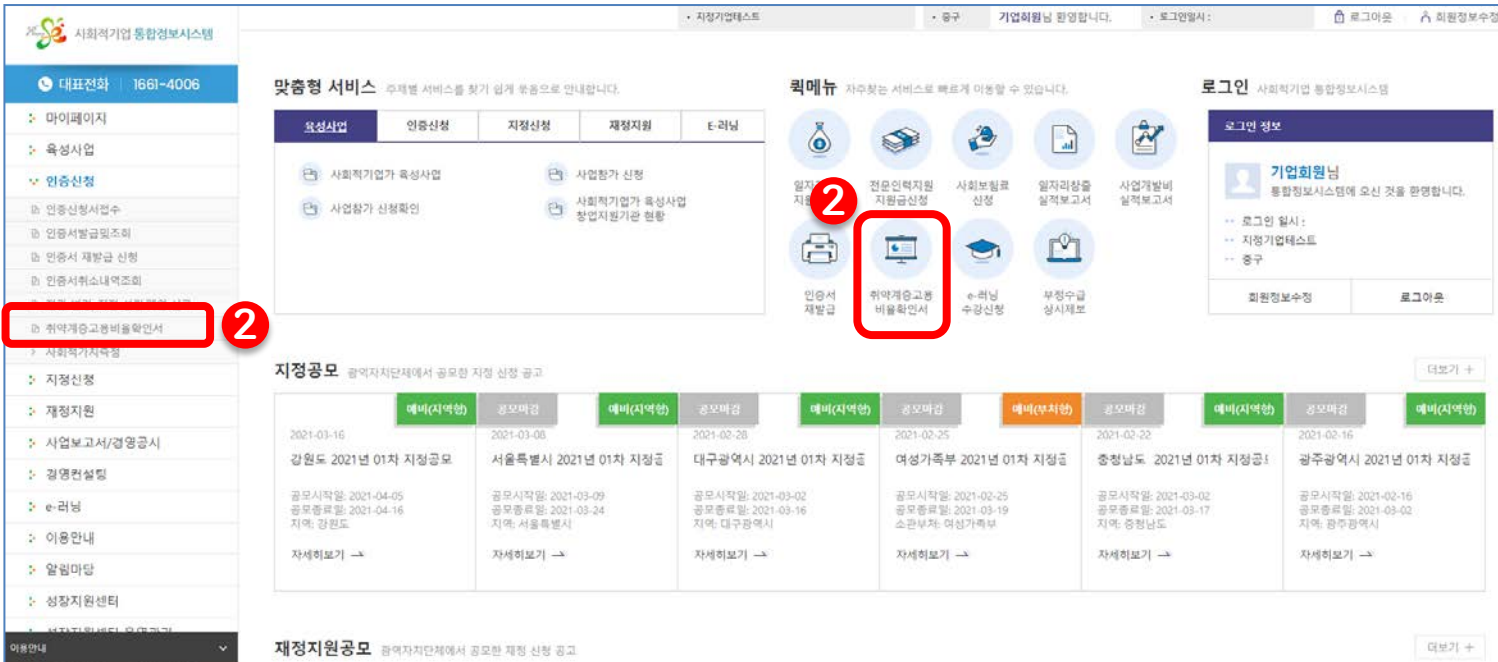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로그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속

-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해, 일반회원 탭 클릭 후 로그인 합니다.
- ② 퀵메뉴 또는 인증신청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신청 화면
(신청 목록, 발급기준)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1 신청년도 [전체] [조회]

2 신청 목록 [총 0건] [확인서 신청] [적용]

순번	접수번호	발급자수	신청일	진행상태	검토(승인)일	발급일/발급번호	발급기준	확인서 발급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3 발급기준

신청서 | 유급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고용비율 | 보완요청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고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X 100 									
근로자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예) 발급신청 (2018.07.2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고용보험 가입일</th> <th>고용보험 가입 일수</th> </tr> </thead> <tbody> <tr> <td>유급근로자 인정</td> <td>2018.01.21</td> <td>180</td> </tr> <tr> <td>유급근로자 불인정</td> <td>2018.01.22</td> <td>179</td> </tr> </tbody> </table>	구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구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취약계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경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참고1~참고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다운로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바로가기](#)
- 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690호, 2022.6.14.)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33호, 2020.12.28.) 개정-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733호, 2022.6.28.)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 개정-시행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649(2018.07.27.)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입시저장](#) [신청서 제출](#)

① 기존에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을 클릭 시 상세페이지를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신청서 등록을 원하는 경우 **[확인서 신청] 버튼 클릭** 및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탭을 작성합니다.

* PDF파일만 첨부

③ **[발급기준]** 탭을 클릭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① [신청서] 탭에 있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기업정보 수정이 있는 경우: '인증신청 - 인증서 재발급 신청' 하여 처리 된 후 확인서 신청)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유급근로자 전체동의서 제출
(명부와 순서 일치)
-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사회적기업 본점+지점 첨부
- ②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내용을 저장합니다.

2. 신청 방법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신청년도: 전체 [조회]

신청 목록 [총 0건] 확인서 신청 5건 [적용]

순번	접수번호	발급차수	신청일	진행상태	검토(승인)일	발급일/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서 발급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1

발급기준: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고용비율 보완요청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서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자(자동생성) [] 신청인 [기업회원0007] 결과 수신 휴대폰번호 [] - [] - [] SMS 수신동의

사용용도: [] 계약 기타 /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결과 수신 이메일 [] @ [] E-mail 수신동의

2

구비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임시저장 신청서 제출

① 꼭 20MB 이하의 PDF 파일만 업로드해 주세요! 20MB 이상인 파일은 '신청서 제출'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직인 필수)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원본 대조필 직인 필수)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 사회적기업 본점+지점	[파일선택]	[파일삭제]	[PDF 보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2. 신청 방법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홈 > 인종신청 >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발급기준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고용비율 보완요청

유급근로자 인정 기준

- 고용보험 가입 유급근로자
※ 고용보험 미 가입 유급근로자는 유급근로자로 미 인정

취약 계층 인정 기준

- 인증지침 준용
※ 취약계층 관련 서류는 행정기관 발행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예비지정 및 고용부 인증 당시 서류

유급근로자 입력 시 유의사항

- 만55세 이상 고령자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예: 홍길동(저소득자+만55세 이상) → 고령자)
- 총 근로자 수(고용보험조회)와 유급근로자 수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첨부파일은 PDF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유급근로자 명부 [총 3건]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취약계층유형	취약계층 제출서류			유급근로자 해당여부			입사일	주 근로시간 (시간)	월 임금액 (원)	고용형태	직종
				파일명	첨부	삭제	다움	기업명	해당여부					
○○○	801111-*****	남	일반					미해당	고용보험체크	2021-07-08	40	2,000,000	무기계약	서비스종사
○○○	700222-*****	남	장애인	TEST 복지카드.pdf				미해당	고용보험체크	2021-07-08	40	2,000,000	무기계약	사무직
○○○	560111-*****	여	고령자					미해당	고용보험체크	2021-07-08	40	2,000,000	무기계약	판매직

임시저장 신청서 제출

유급근로자명부 작성 (사이트 직접 추가)

① [유급근로자명부] 탭에 있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 대표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 임원 제외(단, 근로자대표 등기 임원 포함) → 관련증빙(가족관계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자대표확인증·회의록 등)을 신청서 탭의 다른 첨부파일과 함께 스캔하여 파일 제출

② [엑셀 업로드]를 통해 유급근로자를 일괄 등록 할 수 있으며, [추가],[삭제] 버튼을 통해 유급근로자를 직접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취약계층]을 선택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고령자(만55세 이상) 제외

④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이 임시로 저장되며 제출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유급근로자명부 작성 (엑셀파일 일괄등록)

① [엑셀 업로드]를 클릭 시 팝업화면에서 주의사항 확인 및 [샘플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② 엑셀 파일 예시대로 코드형식을 맞추어 입력 및 저장합니다.

③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여 작성한 내용이 맞게 보이는지 확인 합니다.

④ [일괄등록]을 클릭하여 화면에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취약계층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 엑셀파일 등록 시 입력하지 않은 행이 인식될 경우 해당행 전체를 엑셀에서 삭제 후 업로드 합니다.

엑셀업로드

엑셀업로드 주의사항

- ※ 샘플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때 셀 서식을 '텍스트'로 변경하고, 정렬하지 말고 업로드해주세요.
- 주인등록번호는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입력해주세요.
- 성명, 성별(남자 : 1250010 / 여자 : 1250020)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취약계층유형을 각각 입력해 주시고 유형이 '일반' 인 경우 6000009 필히 입력해주세요.
- '입사일' & '월 임금액' & '주 근로시간'을 등록하실 때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 ※ '일표()'와 '마침표()' 하이픈(-)는 입력 시 오류
- 고용형태와 직종은 샘플엑셀파일의 1~4행의 코드번호를 보시고 필히 입력해주세요.

[총 00건]

No	주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 임금액 (원)	주 근로시간 (시간)	고용형태	직종

1 2 3 4

샘플파일 다운로드 파일 업로드 일괄등록 취소

B5 9411031234567

B	C	D	E	F	G	H	I	J
			발만:6000009 주소특자:6000010 고령자:6000011 장애인:6000012 성매매피해자:6000013 청년경력단절여성:6000014				기간제 근로자:1001 무기계약직 근로자:1002	관리자:7000010 전문직:7000011 사무직:7000012 서비스종사자:7000013 판매직:7000014 단순노무직:7000015
성별, 취약계층유형, 고용형태, 직종은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주세요. (- 제외하여 입력)	남:1250010 여:1250020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	1, 2, 3, 4행의 내용은 지우지마세요. 5행부터 작성해주세요.				
주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 임금액 (원)	주 근로시간 (시간)	고용형태	직종
9411031234567	홍길동	1250010	6000010	20210101	1000000	42	1001	7000010

2

2.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 인증신청 >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신청년도: 전체 Q 조회

신청 목록 [총 1건] 확인서 신청 5건 | 적용

순번	접수번호	발급처수	신청일	진행상태	검토(승인)일	발급일/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서 발급
1	2345	1		임시저장		/	~	4

발급기준: 신청서 | 유급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고용비율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서

취약계층 고용현황	전체 유급근로자 수 (명)	0	취약계층 고용비율 (%)	0
	취약계층 근로자 수 (명)	0		

2 ① 신청 시점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검증후 고용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취약계층 고용비율 (참고 화면)


-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탭은 **입력 화면이 아닌 조회 화면**입니다.
- ② 취약계층 고용현황은 신청 기업이 제출한 유급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와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보여주며 그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표기됩니다.
- ※ '유급근로자 명부' 탭에서 근로자 별 '고용보험체크'를 클릭하지 않을 시 고용비율이 보이지 않습니다.
- ③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신청서 내용이 제출됩니다.
- ④ 신청서가 승인되면 **[확인서 발급]**을 클릭할 수 있으며 클릭 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팝업창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번호 표시 영역
- ② QR코드 스캔을 통해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검증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
- ③ 기업정보 표시 영역
※ 기업정보 수정시 '인증신청→인증서 재발급 신청'하여 정보 반영 후 확인서 신규 신청
- ④ 발급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유효기간 표기
- ⑤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볼 수 있는 영역
- ⑥ 본 확인서의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가 보이는 영역(하단의 바코드는 실제 출력물에서만 보임)

1 발급번호 : KOSEA201807240001


2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법인명(단체명)	테스트기업	인증번호	제0000-000호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5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대표자 성명	테스터1	법인등록번호	11111111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111111111	확인서 유효기간	2019.01.19 까지 (발급일 2018.07.24)
취약계층 고용현황	취약계층 근로자수	1	취약계층 고용률
	전체 유급 근로자수	1	100 %
용도	행정기관 제출용		

위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임을 증명합니다.

2018 년 07 월 24 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본 확인서는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증명서발급사실확인' 에서 발급번호 확인 및 검증업(상단 QR 스캔을 통해 설치)을 통해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180일)

6 

4

취약계층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 증빙서류 제출	-----	19p
1) 저소득자	-----	19p
2) 고령자, 3) 장애인	-----	23p
4) 성매매 피해자	-----	24p
5)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	25p
6) 북한이탈주민	-----	26p
7) 가정폭력 피해자	-----	27p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28p
9) 결혼이민자	-----	29p
10) 갱생보호 대상자	-----	30p
11) 범죄구조피해자	-----	31p
12) 기타	-----	32p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1.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1 · 일자리창출사업 승인 공문

증빙2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증빙3 ·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의 경우 발급 일자 확인(고용보험 가입일 또는 예비·인증월의 직전 월·일에 발급한 경우 인정)

○ ○ 시
(관용)
제목 [예시]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대상자 승인 통지

1. 과시내 무궁암 1동 행정복지센터

2. 과시내내 제충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대상자로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통지합니다)

회사명	대상자 (성명/월일)	승인여부	승인일	비고
		승인		취약계층 (저소득층)

붙임 : 취약계층(저소득층) 검토 1부, 문.

일자리창출사업 승인 공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7.26> 1회
사회보장급여 [] 생활(생활) [] 생장(대상제) 통지서
변경·결정·중지·상설

연월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금액	급여계시일
본인			기초생활급여	00000.0000 ~ 00000.0000	-
가족			-	-	-

변경·결정·중지·상설

연월 일 시

연월	날	일부러	내용
<input type="checkbox"/> 변경	사	출	가사원리 사출, 출생, 영적입대, 교정시설 수용 중의 가사원 변경, 가사원리 전·출입 등 가사원 변동 기타
<input type="checkbox"/> 결정	사	출	없거나 기타사항을 변경(합의) 기타 신청 또는 신청 변경, 제 다른 복지신청으로 급여대상자 선정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이나 실종 등 사유 발생 등으로 추경되는 경우, 복지예산의 지원 대상 선정 절차가 완료된,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 선정, 거주불능자로 등록된 장애인과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장애인(제외) 보호가구의 필요성상 요구 사유 기타(이하 다른 사유는 적용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중지	사	출	2015년 07월 17일 부터 사설(가정)장르
<input type="checkbox"/> 상설	사	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의 사망, 국가유공자 유족의 사망, 국가유공자 유족의 사망, 기타(이하 다른 사유는 적용하지 않음)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7.26> 1회
제목 [예시]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1. 생장

2. 세대주(생장/사망)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5. 제출일

특정사회적기업-특정사회적기업-시장-구공-구공-구공

수급자 증명서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4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있는 모든 자(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등본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발생일, 변동사유, 세대주와의 관계가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
 - * 주소변동(이동한 가족의 초본+이동없는 가족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형제 등 구성원 확인))
- 소득금액증명(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등본에 기재된 인원 모두 제출(사회적기업 입사 전 6개월 간 월평균소득 확인)
 - * 2022년 소득 확인: [홈텍스-신청제출-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월별내역 조회 후 전체화면 캡처
 - * 2022년 소득 중 홈텍스 조회 불가능한 월은 해당기간 근로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 구비
 - * (~2021년)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또는 입사 전 연도부터 현재 사업장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소득금액 조회 제출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소득금액증명]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등본에 기재된 인원 모두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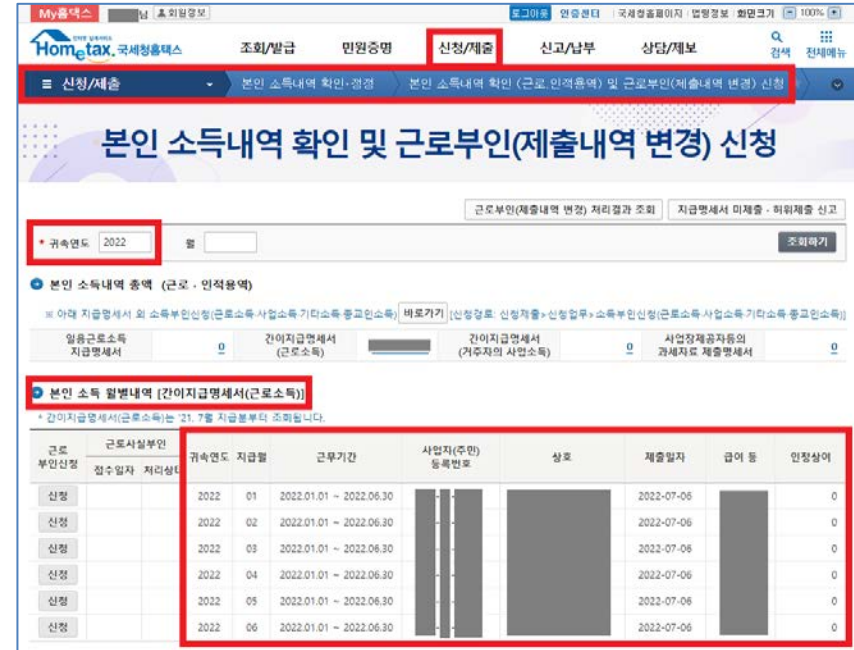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1.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4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있는 모든 자(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 2022년 소득 확인: [홈텍스-신청제출-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월별내역 조회 후 전체화면 캡처
- * 2022년 소득 중 홈텍스 조회 불가능한 월은 해당기간 근로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 구비
- * (~2021년)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또는 입사 전 연도부터 현재 사업장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소득금액 조회 제출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소득금액증명]



[홈텍스-신청제출-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 경로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4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있는 모든 자(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 평균 소득

[저소득자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인	804,294	827,276	769,048	851,994	863,336	936,909	918,850	971,829
2인	1,396,156	1,449,387	1,452,657	1,511,991	1,603,685	1,704,470	1,830,250	1,912,919
3인	1,969,319	2,108,077	2,077,525	2,225,379	2,385,630	2,539,879	2,628,447	2,713,692
4인	2,280,311	2,403,657	2,366,367	2,517,348	2,749,099	2,937,952	2,994,801	3,065,884
5인이상	2,395,613	2,540,647	2,585,637	2,826,444	2,856,503	2,976,492	3,018,893	3,311,600

[저소득자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	1,029,487	1,043,277	1,006,626	1,053,954	1,132,674	1,433,656	1,594,629
2인	1,904,979	1,885,918	1,987,399	1,974,900	2,054,841	2,235,550	2,512,597
3인	2,771,118	2,834,764	2,913,278	3,086,764	3,153,183	3,415,986	3,716,509
4인	3,152,582	3,213,756	3,286,477	3,486,185	3,602,555	4,089,882	4,267,303
5인이상	3,233,056	3,268,902	3,236,883	3,669,790	3,863,369	3,992,680	4,330,945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

증빙

- 없음(시스템 자동 확인)

3. 장애인(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증빙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 중 1개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복사)

- “국가유공자증” 내 보훈번호 21(전상), 23(공상) 모두 상이군경회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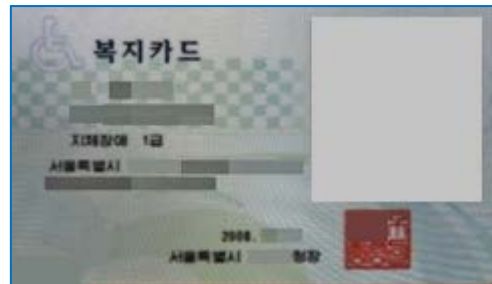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영문) 또는 국문(신체장애)		사진 3.5cmx4.5cm
성별			
주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주장애	부장애		
발달장애			
등급			
등록일자	등록번호		
출도			
제출처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4. 성매매 피해자

증빙1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성매매 피해자 정의: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자에의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5.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외 가족구성원의 돌봄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증빙1 · 일자리창출사업 승인 공문

증빙2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서(중위소득의 100의 60이하)

* 대상자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I 유형 청년특례_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자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지원제도 컨설팅기관에 참여자정보 시스템 캡처 요청하여 첨부_중위소득확인)

증빙3 ·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수신 (장부)
최종 발의자(합동사업 참여대상자) 확인서를 의무 수신

1. 귀 사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대상자(성명:)의 취약계층 해당여부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 직할 지역협력과로부터의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취약계층 해당여부 확인 결과

대상자	확인 결과
성명	중위소득비율
성명	취약계층대상 여부
성명	연기
성명	고용안정장려금 조항
성명	배당(환산)
성명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 <참조> 취약계층의 판정기준 제5호(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청년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구직유망성평가 한 시행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 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에 미친 사람
나, 사회적기업 참여 해당 근로자(합동사업 참여대상자(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온 열하는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단, 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를 포함한다. 끝.

일자리창출사업 승인 공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성명	
IAP 번호	
신청일자	
주소	
종료사유	진행
전체진행기간	
취업활동계획수립일	
소속기관	

위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수료증

번호 2016-087 3

성명: []
생년월일: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시차): []

위 사람은 상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교육훈련 수료증 (만40세이상)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6. 북한이탈주민

증빙1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정의: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발급처: 민원24(www.minwon.go.kr) 혹은 방문신청(각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
- 발급절차: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해외남북교류; 새터민지원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확인 후 문서출력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인 격 사 실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입 국 일	
			보호경정일	

상기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www24.go.kr의 전자발급문서조회확인 기능을 통해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일로부터 90일유지) 또한 문서상단의 위급번호로 전화확인(국번02-6228-3628)을 하거나 방문확인(주소)을 할 수 있습니다.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7. 가정폭력 피해자

증빙1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가정폭력 피해자 정의: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증빙1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정의: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문서확인번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신청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시** **삼상**인 **관** **청** **서** **장** **인** **인**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취득확인 메뉴를 통해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화면의 바코드도 전용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9.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증빙1

· 국적 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

증빙2

· 국적 미취득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결혼 이민) 또는 외국인등록증(F-2, F-5, F-6)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0. 갱생보호 대상자

증빙1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갱생보호 대상자 정의: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참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담당직원 현황	참가기간	~
	직원명	
	연락처	
<p>위 사람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p> <p>(사후관리(취업자) 단계)</p> <p>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p> 		
* 기관 직송용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1. 범죄구조피해자

증빙1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범죄구조피해자 정의: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결정통지서 확인사항>

- 신청자 이름 일치 여부 및 직인 확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0.2>

결정통지서

신 청 인	성명			
	주소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결정일시	년 월 일			
결정주문	[] 구조금을 지급신청을 기각한다.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조금 원을 지급한다.			
이유				
년 월 일				
00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직인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2. 기타

증빙 · 구분 별 증빙 상이

구분	증빙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여성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확인서, 교도소 수용확인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호종료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만34세 이하인 자)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12. 기타_1년 이상 장기실업자

증빙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구직등록 기록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1년 이상 고용보험 미취득)
- 구직등록기록: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구직등록일로 부터 1년 이상 실업상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워크넷 구직신청 내역

구직등록증

12. 기타_노숙인

증빙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자	추천인		직위	전화번호	
	주소			유대폰	
				FAX	
				e-mail	
추천서유					
성기와 같은 인원을		인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input type="text"/>
년 월 일					

1.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2. 기타_난민

증빙

· 난민인정증명서

-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31.>

증서번호 Certificate No.

난민인정증명서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성 명 : 사 진
PHOTO
3.5cm×4.5cm
Full Name

생년월일 :
Date of Birth

국 적 :
Nationality

귀하는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Pursuant of Article 18(1) of the Refugee Act,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recognized as a refugee.

주의사항 (NOTICE)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returned immediately whe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cancelled/withdrawn or an Exit Order has been issued.

년 월 일
yyyy mm dd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직인
Official Seal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복합지[150g/㎡])

5

질문과 답변

+ 질문과 답변 ----- 37p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1. 1년이상 장기실업자 서류로 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고용지청직인)만 있습니다. 구직등록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며, 구직등록을 한지3년 이넘어기록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는 증빙으로 유효합니다.(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2. 근로자 중 퇴사자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는 아직 포함된 상태입니다.

▶ 퇴직한 근로자를 유급근로자명부에서 제외 및 관련 서류(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를 제출해주세요.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에 있는 유급근로자 인원이 실제 고용한 인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180일 미만으로 가입된 자의 경우 유급근로자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4. 유급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데 비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보험조회가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함에도 고용보험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로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합니다.

5. 취약계층 근로자 퇴사 후 다른 취약계층을 고용하였습니다. 아직 180일이 되지 않았는데 유급근로자로 인정되나요?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아닐 경우, 유급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내번호(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감사합니다.